

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<h2>1월 12일(수) 조간 (1.11. 12:00 이후 보도)</h2>	
배 포 일	2021.1.11. / (총 7매)	담당부서	아동권리과
보건복지부	과 장	송 양 수	044-202-3430
아동권리과	담 당 자	공 주 영	044-202-3441
아동권리보장원	본 부 장	장 화 정	02-6454-8621
아동보호본부	담 당 자	한 명 애	02-6454-8622

###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

- 전문가정위탁사업 국가 지원 실시, 아동 보호 시 월 100만원 지원 -  
- '전문위탁부모' 연중 모집(문의 1577-1406) -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와 아동권리보장원(원장 윤혜미)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·2세 이하 아동·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'전문가정위탁사업'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,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(이하 '전문위탁부모')가 보호대상아동\* 중 학대피해아동·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.
  - \*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
- '전문가정위탁사업'은 '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,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\*에서만 운영되었으며,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.
  - \* 7개 지자체에서 34명의 아동 보호(2021.3월 기준)

-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「전문위탁부모 Pool」을 활용하여 해당 시·도, 인접 시·도, 전국 순으로 적합한 '전문위탁부모'를 확인하고,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다.

- 한편,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'전문위탁부모'를 모집한다.

-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,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, 가정위탁 양육 경험(비혈연)이 3년 이상이거나, 사회복지사·교사·의료인·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.

-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'전문위탁부모'로 선정될 수 있다.

- 최종 선정된 '전문위탁부모'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, 아동을 보호하고, 매월 전문아동보호비(100만 원)를 지원받는다.

- '전문위탁부모'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(<http://ncrc.or.kr>) 또는 대표번호(1577-1406)로 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(시도)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(1577-1406)로 문의하면 된다.

-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"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."라고 밝혔다.

- 아울러, "아동에게 부모의 울타리를 제공할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"라고 말했다.

-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아동보호본부장은 “전문가정위탁사업을 통해 2세 이하 영아와 특수육구 아동 등이 가정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.”라며,
  - “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위탁부모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- <붙임> 1. 전문가정위탁사업 개요  
 2. 전문위탁부모 자격 요건  
 3.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
 4. 가정위탁사업 안내문

**붙임 1** 전문가정위탁사업 개요

- (정의) 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·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
- (근거)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,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
- (사업대상)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중 학대피해, 2세 이하 (36개월 미만), 장애, 경계선지능(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)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
- (지원대상) 사업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
  -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, 형제·자매가 함께 배치 되어야 할 경우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판단
    - ※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
- (지원금액) 월 100만 원
  - 동일 가정 내 1명 이상의 아동(형제·자매)이 배치된 경우 각각 지원
- (지원기간)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
  - (2세이하) 35개월까지 지원
  - (학대피해아동 등) 보호종료 또는 원가정 복귀 시까지 지원
    - 전문가정위탁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전문가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가능
- (추진절차) 전문위탁부모 모집·양성(아동권리보장원, 가정위탁지원센터) → 전문위탁 부모 자격심의·선정결과 통보(지자체) → 위탁부모 추천(가정위탁지원센터) → 전문위탁부모 책정(지자체) → 사례관리(지자체, 가정위탁지원센터)

**붙임 2** 전문위탁부모 자격 요건

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

- 가. 위탁된 보호대상아동(이하 "위탁아동"이라 한다)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
- 나.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
- 다.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. 다만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라.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
- 마.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 또는 정신 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
- 바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
  - 1)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
  - 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
    - 가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
    - 나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
    - 다)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
    - 라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
    - 마)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
    - 바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    - 사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「평생교육법」 제32조제1항·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·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- 3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) 또는 2)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
- 사.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
- 아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
**붙임 3**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

○ 18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

기관명	주소	연락처
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	강원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, 2층	033-255-1406
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	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, 7층	031-234-3980
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	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30-11, 2층	031-821-9117
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	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, 5층	055-237-1226
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	경북 경산시 안강읍 비화원로 10-4, 1층	054-705-3600
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	광주시 북구 우치로311번길 15	062-351-1206
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	대구시 동구 이양로 291, 1층	053-656-2510
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	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, 804호	042-242-5240
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	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57, 3층	051-758-8801
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	서울시 중구 무교로 20, 3층	02-325-9080
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	울산시 남구 중앙로 216, 4층	052-286-1548
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	인천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, 8층	032-866-1226
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	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28	061-279-1225
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	전남 순천시 저전길 84	061-744-1964
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	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, 6층	063-288-7770
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2, 3층	064-747-3273
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	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, 4층	041-577-1226
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	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, 404호	043-250-1226

붙임 4

가정위탁사업 안내문

위탁가정 신청절차



“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 
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”  
 <가정위탁 상담·신청문의>  
**1577-1406**

구분	주소	연락처
서울	서울 중구 북교로 21-1 (연희동) 4층	02-389-9000
부산	부산 수영구 수영로 201-1 3층	051-759-4901
대구	대구 달서구 이천로 201-1 3층	053-869-2210
인천	인천 남동구 내동로 201-1 4층	032-869-1228
광주	광주 북구 구암로 21-1 1층	032-381-1208
대전	대전 중구 보문로 206-1 4층	042-281-4500
울진	울진 남구 중앙로 201-1 4층	053-280-1968
경기	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로 201-1 2층	031-284-9000
	경기 고양시 일산구 신원로 201-1 4층	031-281-9117
강원	강원 춘천시 후서로 271-1 2층	033-250-1406
충북	충북 충주시 불암로 201-1 4층	043-280-1228
충남	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1-1 4층	041-271-1228
전북	전북 전주시 완산구 불암로 201-1 2층	063-280-7770
전남	전남 목포시 영보대로 20	061-279-1228
	전남 목포시 서천로 64	061-784-1968
경북	경북 경주시 안압지비동로 104-1 1층	054-755-9900
경남	경남 창원시 마산구 한양로 271-1 1층	055-281-1228
제주	제주 제주시 연동로 201-1 3층	064-747-5273
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 
가정에서  
보호하는  
가정위탁



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

보호대상아동이란?

18세 미만의 아동으로,  
보호자가 없거나  
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자가  
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 
능력이 없는 경우 등  
보호가 필요한 아동

\*피해 아동이라도, 대학에 재학 또는 취업 등이  
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요청가능

가정위탁 보호유형

- **일반가정위탁**: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  
(기간: 3개월, 최대 6개월)
- **전문가정위탁**: 학대피해, 2세 이하, 장애,  
공계선 지능 아동 등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 
가정에서 보호양육
- **일반가정위탁**: 보호대상아동을  
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

가정위탁이란?

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상병의, 가정폭력,  
아동학대, 중신입장 등의 전력이 없고  
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 
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



위탁부모 선정기준

- 일반(일반가정)위탁**  
(요건사항)  
▶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 
아이가 없는 가정의  
소득이 있는 가정
  - ▶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 
인정하고, 양육의 권리가  
가능한 가정
  - ▶ 2세 이상이면, 위탁아동의  
나이 차이가 6세 미만
  - ▶ 본인의 수가 위탁아동을  
포함하여 4명 이내
  - ▶ 가정에 성폭력, 가정 폭력,  
아동학대, 성인양육 등  
전력이 없는 자가 양육할 것
- 전문(전문가정)위탁**  
(요건사항)  
▶ 위탁부모 (전문(2차 이상)  
사회복지사)  
보육교사  
유아 / 초·중등교사  
의사간  
합스산 상담사  
심리전문가 등

위탁가정 지원혜택

- ▶ **양육보조금**: 아동 1인당 월 10만원(일반) 또는 15만원(전문) 지급
- ▶ **생계·의료·교육 급여**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
- ▶ **전문아동보호비**: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지급 (일반아동 위탁만)
- ▶ **일시보호비**: 피 위탁아동 긴급 입실 공간(1박당 4만원)
- ▶ **아동용품구입비**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(공과 제외)
- ▶ **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**: 상해(법정)지정(보험) 1인당 100만원 보장
- ▶ **심리검사·치료**: 위탁아동 심리검사·치료비 지원
- ▶ **전세주택**: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
- ▶ **자립지원**: 상담, 수당, 대학등록금 등
- ▶ **사례관리**: 교육, 상담, 서비스 제공, 위기지원 등이 지원

가정위탁사업 추진체계

